

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
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3년 11월 8일

대전광역시장

대전광역시 조례 제4241호

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
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
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숙인 등의
권익을 보장하고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
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
와 협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시장은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
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
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노숙인 복지 시책
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숙인정책
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노숙인 분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
2.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3. 노숙인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2. 노숙인복지시설의 장
3. 노숙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
4. 노숙인 정책에 관한 풍부한 학식을 갖춘 사람

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사업) 시장은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상담 및 보호사업
2. 무료급식사업
3. 의료지원사업
4. 자활·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
5. 여성·장애인·노인 등 고위험군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
6. 인식개선 및 노숙 예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·홍보사업

7.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

8.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

9.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사회복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

제7조(비용의 지원)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보수교육) 시장은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보수교육(補修教育)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노숙인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